

평생교육법 [일부개정 2008.2.29 법률 제8852호]

제5장 평생교육기관

제28조 (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)

④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평생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받은 학습비 등의 반환 등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평생교육법시행령 [전부개정 2008.2.14 대통령령 제20607호]

제5장 평생교육기관

제23조 (학습비의 반환 등)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 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
 2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 3.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비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[별표 3]

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1.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 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 2 항 제 3 호의 반환 사유에 따 른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 이 내 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총수업시간의 1/30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0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0이 지나기 후	반환하지 아니함
	나. 학습비 징수기간 이 1개월 을 초과 하는 경 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 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 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		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 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 을 기준으로 한다.	

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

<'11.03.31, 평생학습정책과>

□ 목적

-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
- 민원 소지 차단으로 학습자 만족도 및 평생학습기관 신뢰도 제고

□ 현황
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.
 - 학습비 징수기간과 반환사유 발생일을 잘못 혹은 서로 다르게 해석 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반복적인 민원 발생

□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

- ① 학습비 징수기간 :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(해석사례① 참조)
 - 1개월 이내 :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 - 1개월 초과 :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- ② 1개월 산정 기준
 - **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를 적용**(해석사례② 참조)

※[민법 제160조]

- ①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(曆)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②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-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-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(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)

※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(日)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. 예를 들어,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

□ 학습비 반환 실례

- 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(해석사례 ③ 참조)
 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- 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(8주/15주)인 경우(해석사례④ 참조)
 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 -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'달'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 - '1달'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

※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에 준하여 산출
- ③ 기타
 -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 - 10원 미만은 절사함

□ 기타

- 본 지침의 적용 시점
 - '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, 기 환불한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관별로 적의 판단
-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,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

[붙임] 해석 사례

① 학습비 징수기간

- ① 수업기간이 3월 7일~4월 28일인 경우
 - 1개월 이내⇒ 3월 7일~3월 30일, 4월 1일~4월 28일, 2회에 걸쳐 징수
 - 1개월 초과⇒ 3월 7일~4월 28일분 학습비를 한번에 징수
- ②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~4월 6일 이내인 경우 ⇒ 1개월 이내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~4월 8일 이후인 경우 ⇒ 1개월 초과

② 역에 의한 계산

- ①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2월 7일~5월 18일 ⇒ 3개월 12일로 계산
 - 2월 7일~3월 6일 : 실제 일수 28일이나 1개월
 - 3월 7일~4월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 - 4월 7일~5월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 - 5월 7일~5월 18일 : 실제 일수 12일
- ②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~5월 5일 ⇒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 - 3월 7일~4월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 - 4월 7일~5월 5일 : 실제 일수 29일
- ③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4월 7일~6월 5일 ⇒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 - 4월 7일~5월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 - 5월 7일~6월 5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29일로 계산(1개월이 안되므로)

③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이하)

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3월 7일~4월 6일, 학습비 10만원

- ① 3월 09일 학습 포기
 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 - $$\text{☞ } 100,000\text{원} \times \frac{2}{3} \Rightarrow 66,670\text{원 반환}$$
- ② 3월 16일 학습 포기
 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 - $$\text{☞ } 100,000\text{원} \times \frac{1}{2} \Rightarrow 50,000\text{원 반환}$$
- ③ 3월 22일 학습 포기
 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

④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초과)

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3월 7일~6월 13일(3개월 7일), 학습비 30만원

1개월 학습비 약 92,780원, 마지막 7일은 약 21,650원

※ 계산법 : 300,000원 = [1개월 평균학습비 $\times$ 3개월] + (1개월 평균학습비 $\times \frac{7}{30}$)

$$[1\text{개월 평균학습비}] = 300,000\text{원} \div 3 \frac{7}{30}$$

① 3월 07일~ 4월 6일 포기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(92,780\text{원} \times \frac{2}{3}) + 207,210\text{원} = 269,06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(92,780\text{원} \times \frac{1}{2}) + 207,210\text{원} = 253,60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207,21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※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

② 4월 7일~5월 6일 포기(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)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(92,780\text{원} \times \frac{2}{3}) + 114,430\text{원} = 176,28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(92,780\text{원} \times \frac{1}{2}) + 114,430\text{원} = 160,82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·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$$\Rightarrow 114,430\text{원} \text{ 반환}$$

※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